

2022 - 43

1

서울특별시 응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『건축법』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제 22차 건축위원회 심의[조건부(보고)완료]를 거쳐 『건축법』 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27일

서울특별시

1. 지정목적

- 가.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,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
- 나. 응봉산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유형/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의 자연지형 및 동선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
- 나. 자연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공동주택 단지 조성
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
응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	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3-162번지 일대	39,642

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
가.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

구역명	용도	대지면적(㎡)	높이(층수)
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계	39,642.00	-
	공동주택용지	28,624.00	45m이하 (평균 12층 이하, 최고 15층)
	정비기반시설 등	11,018.00	-

※ 세대수, 면적, 용도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요함

나. 특례적용사항

구역명	특례적용사항	적용취지
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「건축법」 제 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: 인동간격(대지 내에만 적용) 20% 완화	특례적용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 구현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가능

4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7호(2020.10.05.) 『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·지형도면 고시』에 따름

5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: 관련규정에 따름

6. 기타사항

-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(☎02-2133-7214) 및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86-6582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